

의안
번호

322

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9. 03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22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08. 13.

라. 회부일자 : 2024. 08. 28.

2. 제안이유

-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4년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0조
- 2) 설치목적 :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
- 3) 설치연도 : 1993년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-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2)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사업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
- 지원대상 : 성북구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지원기준
 - 금리 및 융자기간 : 연 1.2%,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 - 융자한도 : (담보) 최대 1억 원 이내, (신용) 최대 5천만 원 이내

다.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개요

1) 변경 사유

-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 반영
- 2024년도 4월 융자금 회수액 반영

2) 2024년도 기금변경 내역

○ 2023년도 기금 결산 현황

(단위:원)

조성액			당해연도 사용액 (라)	당해연도말 조성액 (마)=(다)-(라)
전년도말 (가)	당해연도 (나)	계 (다)=(가)+(나)		
2,674,884,530	2,026,683,191	4,701,567,721	2,925,830,806	1,775,736,915

○ 2024년도 기금 변경 총괄

(단위: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
기금 총 운용액	3,117,232	3,138,010	20,778

3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3,117,232	3,138,010	20,778	
융자금 회수 (이자 포함)	1,051,753	1,282,274	230,521	2024년 4월 융자금 회수액 반영
예치금 회수	1,985,479	1,775,736	-209,743	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
이자 수입	80,000	80,000	-	

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: 천원)

사업명-편성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3,117,232	3,138,010	20,778	
비용자성 사업비	102,750	102,750	-	
용자성 사업비	3,000,000	3,000,000	-	
예치금	14,482	35,260	20,778	

○ 2024년도 기금 조성(안)

(단위:천원)

조성액	사용액	2024년말 조성액 (잔액)
3,138,010	3,102,750	35,260
·용자금 회수: 1,282,274 ·예치금 회수: 1,775,736 ·이자 수입: 80,000	·비용자성 사업비: 102,750 ·용자성 사업비: 3,000,000	· 2024년도로 이월(예치금)

- 당초 '23. 9월 예측했던 용자금 회수액 대비 실제 원금 및 이자금 회수액 증가로 차이 발생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0조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변경안은 2024년도 융자금 회수액과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이 감소되어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¹⁾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0조²⁾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 중 2024년 4월 융자금회수액(이자포함) 2억 3,052만원과 '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분 2억 974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2,077만원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0조(중소기업육성기금)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1. 일반회계 전입금 (개정 2020.12.31.)

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(개정 2020.12.31.)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5.5.14, 2020.12.31.)

1.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,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

2.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

3. 중소기업 및 중·소상공인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
4. 기금의 운용·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(개정 2015.5.14, 2020.12.31.)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예치금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143%, 2,077만원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제2항3)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-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.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